

보도시점 2023. 10. 9.(월) 12:00 / 배포 2023. 10. 6.(금) 08:30
< 10. 10.(화) 조간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 16개 조항 시정 -

※ 연휴 엠바고 주의 : 10월 9일(월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유형(10개 유형, 총 16개 조항)]

- ①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3개 조항)
- ②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4개 조항)
- ③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조항(1개 조항)
- ④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1개 조항)
- ⑤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1개 조항)
- ⑥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1개 조항)
- ⑦ 부당한 면책 조항(1개 조항)
- ⑧ 자동 갱신 조항(2개 조항)
- ⑨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1개 조항)
- ⑩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1개 조항)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되었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 A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B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Live 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 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여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고, 저작재산권은 양도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권리 이전이 불가함

※ C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판매자는 회사를 상대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D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회사는 회사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운영 및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작물의 사용권을 행사합니다.”

추가로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C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1]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붙임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책임자	과 장	김동명 (044-200-4483)
		담당자	사무관	이정희 (044-200-4489)



[붙임 1]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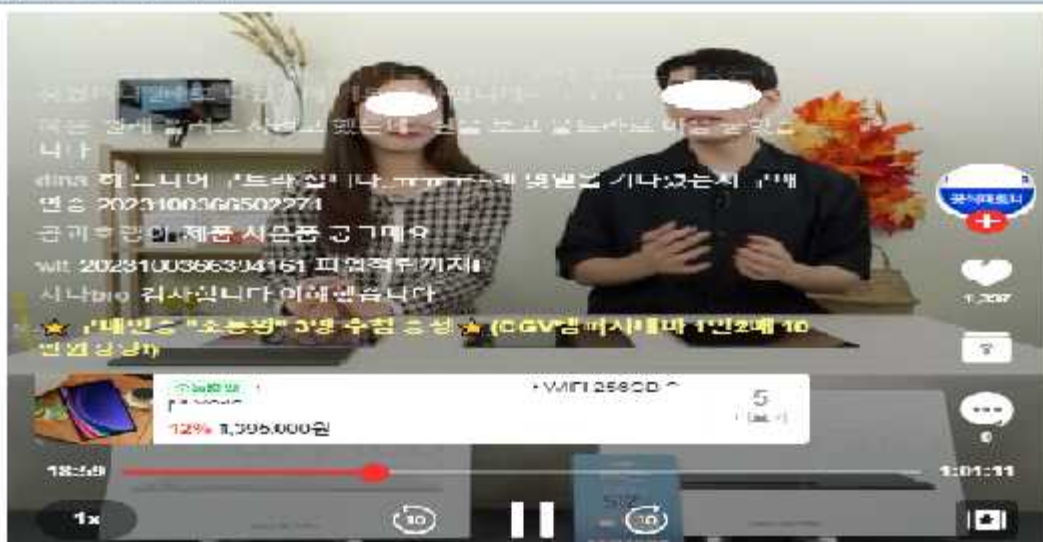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1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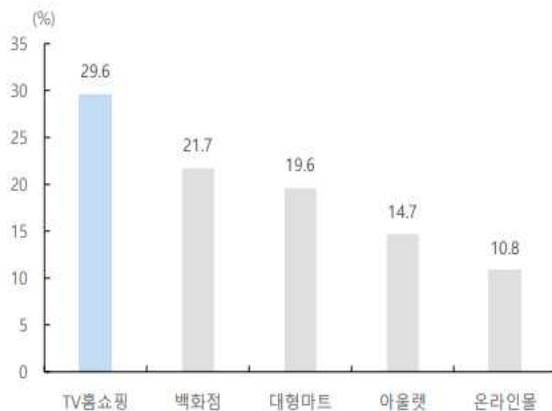
- 비대면의 일상화와 함께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쇼핑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live-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이다.
- 전통적인 방식의 전자상거래는 미리 업로드된 사진이나 설명 등 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와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남기거나 다른 소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1] 라이브커머스 예시



-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 홈쇼핑과 가장 유사하나, ①방송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동영상을 송출하고, ②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콜센터 운영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표 2] 유통업체별 실질수수료율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주요 라이브커머스 업체 수수료

	서비스 출시 시기	비즈니스 모델
네이버	2020년 3월	라이브커머스 수수료 3% + 결제수수료
카카오	2020년 5월	라이브커머스 수수료 10~20%대 (추정)
그립	2019년 2월	라이브커머스 수수료 10% 대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라이브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라이브커머스에 한정된 시장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2023년까지 약 10조 원까지 성장하여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4%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 전망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 이러한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책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

*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2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①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 (시정 전)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상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판매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 ... 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Live 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행위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시정 후)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수정하여,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자진시정하였다.

②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

- (시정 전)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판매자가 플랫폼에 대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판매자는 회사 및 회사로부터 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자들을 상대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u>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u>
○ ... 회사는 회사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운영 및 <u>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작물의 사용권을 행사합니다.</u>
○ 회사는 ... <u>임의의 정보통신망에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수정할 권리를 가집니다.</u>
○ ... 회사에게 ... <u>수정할 권리를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부여합니다.</u>

- 저작물을 단순히 재구성(편집)하는 것이 아닌 수정하는 것, 라이브커머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저작인격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저작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약관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고,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됨

- ⇒ (시정 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에 대해 내용상의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하였고,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필요 시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③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및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

- (시정 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 ‘추후 발생하는 회사의 사정’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콘텐츠를 삭제·수정하거나 임의로 사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또는 구매자를 포함하여 제3자와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그 밖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 추후 발생하는 <u>회사의 사정에 따라</u>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판매자는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자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 함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부분의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영상을 플랫폼 또는 쇼핑몰에 게시하여 추가적인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 (시정 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콘텐츠를 삭제·수정·사용범위 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 (예시) 콘텐츠가 구매자의 경험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구매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0조 제0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④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

- (시정 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 (시정 후) ‘회원 및/또는 회사의 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⑤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시정 전) 구체적인 분쟁 발생 원인 및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자는 무조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

불공정 약관 예시

자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당사자는 대안적인 분쟁해결 기관의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약관은 약관법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 (시정 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하였다.

⑥ 부당한 면책 조항

- (시정 전)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발생 시 전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을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방영된 영상물로 인하여 권리침해, 법령위반 등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이 책임지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이러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1호).

⇒ (시정 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심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의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개 사업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배제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분쟁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전에 예상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예시

시정 전·후 약관 조항 예시

①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 창작자는 Live 영상 스트리밍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의무가 있으며, <u>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Live 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u>	○ 창작자는 Live 영상 스트리밍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의무가 있으며, <u>‘창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정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Live 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u>
○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판매자의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u>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u>	○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u>판매자의 귀책(이행보조자의 귀책 포함)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u>

②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회사는 판매회원의 상호, 상표, 브랜드를 표상하는 이미지 등 콘텐츠와 판매회원의 게시물을 판매 장려를 위해 임의의 정보통신망에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u>수정, 편집할 권리를 가집니다.</u>	○ 회사는 판매회원의 상호, 상표, 브랜드를 표상하는 이미지 등 콘텐츠와 판매회원의 게시물을(필요한 경우 편집하거나 콘텐츠와 게시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u>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회원의 판매 촉진, 서비스 홍보 및 개선 목적에 한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 페이지, 외부서비스(SNS 등)에서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u>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회사에 방영된 영상물의 저작권 및 영상물에 등장하는 ○○○의 초상권 등은 ○○○에게 귀속되나, ○○○는 회사에게 회사를 통해서 영상물을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 및 <u>수정, 편집할 권리를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부여합니다.</u>	○ 회사에 방영된 영상물의 저작권 및 영상물에 등장하는 ○○○의 초상권 등은 ○○○에게 귀속되나, 회사는 ○○○의 영상물을 (<u>필요한 경우 편집하거나 콘텐츠와 게시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u>) <u>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회원의 판매 촉진, 서비스 홍보 및 개선 목적에 한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 페이지, 외부서비스(SNS 등)에서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u>
○ 창작자는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를 사용(복제, 배포, <u>수정, 표시, 공연 등</u>) <u>할 수 있는</u>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 가능하며, 재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를 ‘△△△’에 부여합니다. ‘△△△’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비롯하여 서비스 및 <u>△△△의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 및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만</u> 이러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창작자는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를 사용(복제, 배포, <u>편집, 표시, 공연 등</u>) <u>할 수 있는</u>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 가능하며, 재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를 ‘△△△’에 부여합니다. ‘△△△’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비롯하여 <u>‘콘텐츠’를 검색서비스, 쇼핑서비스 등 ‘△△△’의 다른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 및 개선하기 목적에서만</u> 이러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판매자는 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회사에게 판매자 콘텐츠를 복제, <u>수정, 리포맷, 배포, 대여, 공중송신, 전시, 공연, 방송 및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 및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이용권을</u>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이용권은 양도 가능하고, 타인에게 재허락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u>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u> 판매자 콘텐츠를 복제, <u>편집 및 형식상의 수정, 리포맷, 배포, 대여, 공중송신, 전시, 공연, 방송 및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 및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이용권을</u>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이용권은 <u>본건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범위에서</u> 양도 가능하고, 타인에게 재허락 될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판매자는 회사 및 회사로부터 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자들을 상대로, <u>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u>	○ 판매자는 회사 및 회사로부터 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자들이 <u>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서비스의 목적 범위를 넘어 판매자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u>
○ 판매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라이브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라이브 콘텐츠의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판매자는 서비스에 라이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라이브 콘텐츠를 사용, 저장, <u>수정</u> ,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락하는 전세계인, <u>사용권(라이선스)</u> 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호를 포함하여 회사의 <u>서비스 운영 및 회사의 다른 제3의 서비스를 운영</u> 하고, <u>홍보 개선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u> <u>사용권을 행사합니다.</u>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라이브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라이브 콘텐츠의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판매자는 서비스에 라이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라이브 콘텐츠를 사용, 저장, <u>편집</u> ,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락하는 전세계인, <u>사용권(라이선스)</u> 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호를 포함하여 <u>회사의 서비스를 운영</u> 하고, <u>홍보 개선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u> <u>사용권을 행사합니다.</u> 다만 <u>회사는 판매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 위 범위를 넘어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u>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③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u>회사 또는 구매자를 포함하여 제3자와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u> - <u>그 밖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u>	○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u>콘텐츠가 구매자 경험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구매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u> - <u>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사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추후 발생하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u>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의 범위를 변경할수 있고</u> , 판매자는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사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제3조 제9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u>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용의 범위를 변경할수 있고</u> , 판매자는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⑤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회사(직원 및 상담원 포함)를 포함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재산상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인격적 권리(이하 합하여 ‘권리’ 라고 합니다)를 침해하거나 <u>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u> - <u>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u> - <u>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u>	○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u>판매회원과 회사의 영업활동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u> - <u>사이트 이용 시 발생된 문제를 이유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금전 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주문거래와 상관없이 회사와 그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u> - <u>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⑥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며, (중략)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며, (중략)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수 있으며, <u>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합니다.</u> ○ 회사는 판매자와 크리에이터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며, (중략)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u>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야합니다.</u>	있으며, 판매자는 <u>분쟁조정센터가 정한 결정을 가능한 최대로 성실히 존중하여야 합니다.</u> ○ 회사는 판매자와 크리에이터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며, (중략) 회사는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u>분쟁조정센터가 정한 결정을 가능한 최대로 성실히 존중하여야 합니다.</u>

7 부당한 면책 조항

심사대상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 회사에서 방영된 영상물로 인하여 권리침해, 법령위반 등 <u>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과 ○○○가 책임지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u>	○ 회사에서 방영된 영상물로 인하여 권리침해, 법령위반 등 <u>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판매회원과 ○○○가 부담합니다.</u>